

문서번호	건설관리과-47 28
결재일자	2016.3.24.
공개여부	부분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건설관리팀장	건설관리과장	건설안전교통국 장	
김석용	김종수	유영채	03/24 김희동	
협 조	교통행정과장	서종로		
	안전치수과장	함명수		
	도로관리과장	김기용	주차관리과장	정찬모

건설안전교통국
2016 성과상여금 지급계획

2016.3.22.

강 북 구

건설안전교통국

2016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에 의거 근무성적·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

I 지급개요

□ 관련근거

- 『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제6조의2(성과상여금)
- 『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』(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)

□ 지급대상 : 132명

계	5급	6급	7급	8급	9급
132명	6명	33명	66명	20명	7명

□ 지급일 : 2016. 3. 31(예정)

□ 지급기준일 : 2015. 12. 31. (평가대상기간 : 2015.1.1 ~ 12.31)

□ 지급방법 :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(매월 분할)

□ 편성예산 : 387,224,020천원

II 지급계획

□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: 10% 포인트 범위 내

● 지급등급 및 지급률

지급등급(인원비율)	S등급 (20%)	A등급 (45%)	B등급 (35%이내)
지급률(지급기준액 기준)	162.5%	125%	95%

● 지급기준액

(단위:원)

구분	5급	6급	7급	8급	9급
조정 지급기준액	3,225,786	2,773,279	2,357,786	1,958,623	1,655,419

□ 지급대상 : 2015. 12. 31 기준 해당부서 소속공무원

- 지급기준일('15.12.31)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('15.12.30 이전 퇴직자는 지급제외)
-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, 휴직(군입대 휴직자 포함) .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
-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
-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
 - ※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급재발령 일자리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
- 파견근무자는 원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

III 지급절차



평가방법

● 근무성적평정(50점),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(30점), 부서장 평가(20점)

점수를 합산하여 평가

- ▶ **근무성적 평정(필수항목)** : [(‘15년 상반기 + ‘15년 하반기 평정점)/2]
 - 등급 결정 시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 비중 제한 : 50% 범위 내
 -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,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,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
- ▶ **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** :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<붙임 1> 참조
- ▶ **부서장 평가** : 지급단위별 각 부서장이 부서의 특성에 따라 업무난이도, 직무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대2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

● 동점자 처리기준

-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점수가 높은 자
- 근무실적평정점이 높은 자
- 현 보직기간이 오래된 자 또는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른 자

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

●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

- . 위원장: 건설안전교통국장
- . 위 원: 각 과장

● 심의내용

- . 개인별 점수부여 및 적정성 검토
- .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
- . 기타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

□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- 지급단위별 순위 결정시 최대한 공정성 유지
-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
 - ①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를 소속기관(부서)의 장에게 통보 ⇒ 소속기관(부서)의 장은 **즉시**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 통보 < ※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>
 -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(성과 증빙서류 첨부)

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본인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, 기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『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(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)』을 적용함

- 붙임**
1.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.
 2.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및 지급조서 1부.
 3.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.
 4. 이의신청서 1부.

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

성과급심사위원회는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□ 주요 고려사항

- 대한민국 공무원상(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)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
- 구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
-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,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
- 구민으로부터 민원처리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
- 업무 및 제도개선, 예산절감, 고충민원 처리 자, 상훈, 표창수여자, 수상자 등
- 구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
(감점요인)
-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(감점요인)
-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 - ※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,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<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(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, 행정자치부 예규제42호)>

-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,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
- 담합,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
-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(모의)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
-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

【붙임 2】

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및 지급조서(○○급)

□ 지급단위 : 건설안전교통국

[단위 : 원]

순위	소속	직급	성명	근무성적 평가점수 (50점)	부서장 평가 (20점)	심사위 평가 (30점)	총점 (100점)	지급 등급
합 계					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확인자 :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(인)

【붙임 3】

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서

- 안 건 :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률 심의 . 의결
- 일 시 : 2016. . . () :
- 장 소 :

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및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의거 건설안전교통국 소속직원의 “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및 지급조서”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.

2016. . . .

건설안전교통국 성과급심사위원회

구 분	직 위	성 명	서 명(인)
위원장	건설안전교통국장	김희동	
부위원장	건설관리과장	유영채	
위 원	도로관리과장	김기용	
위 원	안전치수과장	함명수	
위 원	교통행정과장	서종로	
위 원	주차관리과장	정찬모	

【붙임 4】

이 의 신 청 서

소 속	직 급	성 명
성과상여금 지급등급		
이의신청 사유 (구 체 적 으 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)		
기타 참고사항		
<p>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건설안전교통국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</p>		

